

우리사회의 여성혐오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

2016. 6. 16

이윤진 연구위원(leeyoonjin81@gmail.com)

요 약

1. 여성혐오 담론 / 1
2. 여성혐오현상과 양성평등정책 / 3
3. 정책적 제언 / 5

보고서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《 요 약 》

○ 우리사회는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

- 여성혐오란, 여성을 사회적 약자이기 이전에 남성에 대한 상대적 약자의 지위로 보는 '사회규범적 현상'으로 정의 가능

○ 최근 여성혐오 주도세력이 특정되어 활동하는 상황

- 여성혐오란, 여성을 사회적 약자이기 이전에 남성에 대한 상대적 약자의 지위로 간주하고 나타나는 현상
- (미국 트럼프 사례) 美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, 여성혐오를 증폭시킨다고 비판받음
- (한국 일간베스트) 김치녀나 OO충 등의 비속어로 여성혐오를 주도, 이에 대항하여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메갈리아가 등장하여 남성혐오현상을 부추기며 젠더간 대립 양상을 보임

○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로이 확산시키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

- 여성혐오범죄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, 특히 기존의 여성 안전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되 장기적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
- 아울러 범국가 차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

○ 이러한 견지에서, 아래 정책을 우선적 대책으로 제안함

- 성인지 교육의 정규 커리큘럼화
- 교육부와 여가부의 협업구조 마련
-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등한 입법의 수준으로 여성차별금지법의 입법화

1. 여성혐오 담론

□ 강남역 사건과 여성혐오 담론

- 5.17 새벽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우리사회는 여성혐오범죄로 규정
 - 同사건에 대해 “묻지마 사건이냐, 여성혐오 사건이냐”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유형화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
 - 이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, 여성이라는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적 문제로 환원할 것이 필요
- 여성혐오범죄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
 - 기존의 여성 안전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
- 아울러, 同사건을 통해 여성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
 - 정신병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, 규제의 대상을 새로이 형성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확산시키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

□ 사회의 변화와 여성혐오 담론

○ 여성혐오는 사회규범적 시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가진 사회현상

- 여성혐오 인식은 사회 전체적인 프레임이 이미 여성을 ‘피해자로서의 객체’로 규정함으로부터 비롯
- 특히 서구 문화에서 눈에 띄는 현상으로 판도라이야기, 이브의 전설, 마녀사냥, 팜프파탈 등의 옛 전설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혐오 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옴
- 최근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여성을 폄하 발언하거나 ‘김치녀’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등 변화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양산

○ 최근 여성혐오 주도세력이 특정되어 활동하는 상황

- 여성혐오란 여성을 사회적 약자이기 이전에 남성에 대한 상대적 약자의 지위로 간주하고 나타나는 현상
- (미국 트럼프 사례) 美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, 여성혐오를 증폭시킨다고 비판받음
- (한국 일간베스트) 김치녀나 OO충 등의 비속어로 여성혐오를 주도, 이에 대항하여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메갈리아가 등장하여 남성혐오 현상을 부추기며 젠더간 대립 양상을 보임

2. 여성혐오현상과 양성평등정책

□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와 양성평등

○ 생산패러다임이 지식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성역할의 경계가 사라지고 가족의 역할보다는 개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

-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양성평등정책을 통해 대응 가능

○ 여성혐오현상 역시 사회문제를 성별문제로 전환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현상이므로,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룰 때 이러한 시각 또한 약화 가능

□ 양성평등정책 현황

○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실시되고 있음

- 각종 취업 및 교육 역량 강화에 있어 여성 우대가 시행되고,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여성에 대한 지원 우대가 시행 중

○ 성인지 교육의 강화, 성폭력 교육의 강화 등은 대표적인 장기적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

- 이 중에서도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사후 대책 강구를 위한 직접적인 양성평등정책으로 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꼽을 수 있음

□ 양성평등정책 시행 결과

- 다양한 양성평등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성격차지수(gender gap index)는 상승하지 않음

※ 성격차지수는 성평등 관련 국제지수로 교육성취도, 취학률, 임금 격차 등 사회경제적 요소가 주요 지표로서, 한국은 2015년 기준 145개국 중 115위

- 범죄의 대상자로서의 여성의 수치를 통해 볼 때에도 여성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음

※ 한국의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 피해율 세계 1위(2015년 유엔마약조사국)

- 결국, 성평등에 이루기 위해서는 성인지정책의 실질적 효과성 재고 및 정책 수립時 현실의 직접적 반영 등이 필요함

3. 정책적 제언

□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이 구분된 정책 제시 필요

○ 강남역 사건 이후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고 同대책은 여성 안전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‘일단’ 환영할 만함

- 그러나,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부재함에 따라 일회성, 단편성 안전 대책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

○ 향후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의 병행 제시 필요

□ (단기적 대책) 안전 강화

○ 피해여성 원스탑서비스센터 설치 운영

-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하여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 및 복지 지원 연계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 여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기구가 부재

- 사후 대응을 위해 원스탑서비스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보상, 배상, 피해회복 절차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

○ 여성안전전담 CCTV 모니터 요원 배치

- 현재 지역별 CCTV 관리는 소수의 관리 인원에 한해 모니터링 되고 있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

- 기존 정책의 현실적 실효성 향상을 위해 ‘여성안전전담 CCTV 모니터 요원’ 배치 필요

□ (중장기적 대책 1) 성인지 교육의 정규 커리큘럼화

○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(홍보, 캠페인 포함) 필요

※ 성인지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, 정책,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(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)으로, 교육대상은 공무원

○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활성화 실시

- 유아기, 아동기, 청소년기 및 청년기, 사회적 역할이 확장되는 장년기 등 대상 맞춤형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이 실시, 관리되어야 실질적 인식 개선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

※ 학교교육현장에서 관련 교육은 중요내용이 아닐 뿐더러 학교교육은 변화하는 성문화, 성역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<표> 여성가족부의 성인지교육 실시 예정 내용

구분	법령	주요내용	비고
성인지 교육	• 양성평등기본법	• 국가기관 등(국가기관, 지자체) 교육권장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진행(예정)	의무교육 아님 권장사항

주: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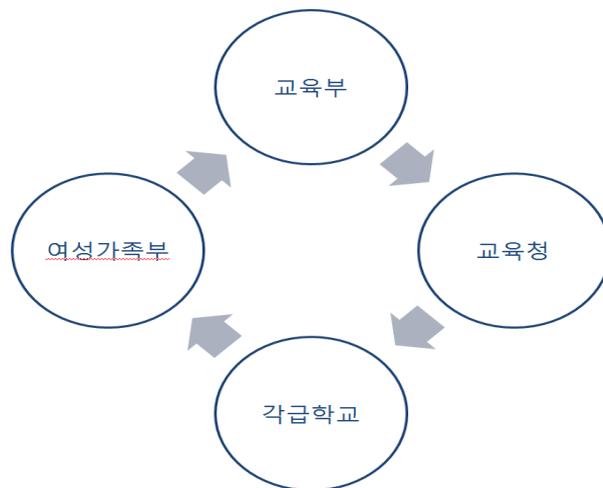
- 중장기적으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, 교육대상확대, 관리방안의 체계화가 요구됨

□ (중장기적 대책 2) 교육부와 여가부의 협업구조 마련

○ 성인지, 양성평등에 전문성을 가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간 공식적 협업 메커니즘 필요

-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 인권 교재 및 교과서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서 교육요소가 적은 인권, 평등, 존중, 소통 교육이 포함
- 이를 정규교육과정에 삽입하는 방안으로 협업 달성 가능

- ※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정과제(안전한 사회 실현)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에서 예방교육의 중요성 부각
- ※ 대통령 국정과제 : 아동 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성 인권 교육 체계화 및 확대



□ (장기적 대책)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등한 입법의 수준으로 여성 차별금지법의 입법화

○ 현재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신체상, 정신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단일법이 부재

※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개별 단일 법률화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선언한 법률

○ 여성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함으로써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선언적 의미를 갖게 됨

- 하위 법률의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여성 관련 기존 법령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